

정조의 세자 책례(冊禮) 시행에 나타난 ‘군사(君師)’ 이념

윤 정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1. 머리말

정조는 신료들을 압도하는 대표적인 ‘학자군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홍재전서(弘齋全書)』와 전 학문 영역을 포괄하는 수많은 어제(御製) 및 어정책자(御定冊子)의 편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재위 24년에 걸쳐 지속된 ‘우문정책(右文政策)’ 속에 학문적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鄭玉子 1978: 1982: 1983). 이러한 그의 정치 운영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내용으로서 주목된 것이 바로 ‘군사(君師)’ 이념이다.

군사(君師)는 군도(君道)와 사도(師道)가 분립되기 이전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국왕이 통치와 교화를 주도하였던 사적을 통해 이상적인 군주상을 수립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왕을 백성 교화의 주체로 전면화하고, 정치 운영에 대한 국왕의 주도권과 학문에 대한 규정력까지 역사적으로 보강하는 논리

주 제 어: 冊禮, 冠禮, 嘉禮, 入學禮, 君師, 大同
the Investiture ceremony, the coming-of-age ceremony, the ‘auspicious’ ceremony, the ceremony of ‘entrance to school’, Gunsu, unity

였다.

근래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정조의 정치 사상에서 군사 이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조가 이를 통해 제시한 학문적 성과와 지향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곧 정치 부문에서 정조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한 상태에서 학문에서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거나 반대로 군사 이념이 정치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박현모 2000①; 2000②). 반면 군사 이념의 정책적 연계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다.

실상 군사 이념은 학문적 차원에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영조의 경우 『성학집요(聖學輯要)』를 통해 안민(安民)을 통해 세도(世道)를 회복하는 군사의 이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하는 정책으로서 균역(均役)과 준천(濬川)의 사업을 전개하였다(윤정 2007②). 정조의 제반 정책은 영조의 사업을 계승 정리하는 것이었는데,²⁾ 그의 군사 이념 또한 영조로부터 적극적으로 전수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정조의 군사 이념이 정책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로 문화 정책이나 사회 통합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으나(鄭玉子 1990: 1996: 1999), 보다 적극적인 구현 대상으로서 왕실 의례의 문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송(禮訟)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왕실 의례는 국왕의 위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매개가 되고 있었고, 국왕권의 강화를 위한 논리로서 군사 이념 또한 왕실 의례에서 우선적으로 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정조 24년 정월에 결정되고 2월에 실행된 세자의 책례(冊禮)이다. 정조는 문효세자(文孝世子)를 잃은 후 얻은 원자 [순조]에 대해 신료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가까이 세자 책봉을 계속 미루다가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책례를 거행하였다. 세자 책례

1) 영조와 정조의 君師이념은 학문진흥책의 차원에서 연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경희(1999), 金文植(2000): (2001) 참조.

2) 영조의 사업을 계승한 정조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탕평책이 꼽히고 있다. 정조의 탕평책에 대해서는 金成濶(1997) 참조.

의 연기는 원자의 위상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 확고한 입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윤정 2005), 책례 역시 정조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다.

특히 정조는 책례를 관례(冠禮) 및 가례(嘉禮)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한편으로 통상 책례와 분리되어 관례·가례와 함께 시행되던 입학례(入學禮)가 배제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끈다. 이것은 정조가 세자 교육 및 책봉을 매개로 하여 국왕이 제반 의리를 규정하고 주도하는 ‘군사’ 이념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는 이러한 양상에 주목하여 정조의 세자 책례 시행에 반영된 군사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먼저 책례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피력되는 정조의 인식을 「홍범(洪範)」의 ‘대동(大同)’ 이념을 내세우는 것과 현종의 전례를 원용하여 정당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 책례의 시행 과정에서 입학례가 배제되는 양상과 이 과정에 반영된 정조의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정조의 ‘군사’ 이념이 정책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의 일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³⁾

2. 세자 책례(冊禮) 논의와 정조의 지향

2.1. 정조의 논의 주도와 ‘대동(大同)’의 표방

정조는 첫 아들인 문효세자에 대해서는 불과 세 살에 세자로 책봉하였지만,⁴⁾

3) 정조의 군사 이념은 학문적 차원에서도 적극 표현되었는데, 『대학유의』 편찬은 그 산물로 주목된다. 특히 『대학유의』가 세자 책례 직전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세자 책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나아가 세자 책례와 『대학유의』가 세자를 매개로 표현되는 왕실 의례와 학문 교육의 차원에서 각기 군사 이념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대학유의』 편찬에 대한 제반 논의는 윤정(2007①)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아울러 『대학유의』의 내용적 특질과 세자 책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문효세자는 동왕 10년에 요절하였다.⁵⁾ 이어 14년에 새로 아들을 얻었는데,⁶⁾ 그에 대해서는 원자(元子)로 삼았을 뿐 세자 책봉은 계속 미루었다. 신료들은 서둘러 세자로 책봉할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였지만, 정조는 “원자의 명호(名號)를 정한 날이 곧 국본(國本)이 이미 정해지는 때이다”⁷⁾라고 하여 원자 책봉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실상 어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그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책봉 후 그에 합당한 자질을 검증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문효세자의 책례 당시에도 정조는 처음에는 7세에 책봉된 숙종과 8세에 책봉된 자신의 전례를 들어 책봉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신료들의 의견에 따라 종묘 사직을 위한 계책임을 이유로 들며 책봉을 단행한 바 있다.⁸⁾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새로 태어난 원자에 대해 책봉을 늦춘 정조의 의도는 세자 책봉에 앞서 그에 합당한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분란의 요소를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⁹⁾ 이 때 정조가 바람직한 전례로 제시한 것은 숙종이었다. 정조는 동왕 22년 세자 책봉의 연기와 관련하여

숙종조(肅廟朝)의 책봉례는 7세에 있었으니 비로소 책명(冊命)을 직접 받는 예[冊命親受之禮]를 거행하였는데, 50년 가까이 왕위에 있으면서 태평 세월을 누렸으며 끝없는 복을 후손들에게 내려주었다.¹⁰⁾

4) 『正祖實錄』 권18, 정조 8년 8월 乙酉

5) 『正祖實錄』 권21, 정조 10년 5월 癸丑

6) 『正祖實錄』 권30, 정조 14년 6월 丁卯

7) 『正祖實錄』 권47, 정조 21년 11월 己巳

8) 『正祖實錄』 권18, 정조 8년 7월 乙卯

9) 당초 의도와 달리 일찍 책봉한 문효세자가 요절한 것은 책례를 연기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켰을 것이다.

10) 『正祖實錄』 권50, 정조 22년 11월 丙子, “肅廟朝封冊之禮 則在於七歲 始行冊命親受之禮 而近五十年御極 太平安樂 無疆惟休 垂裕後昆”

라고 하였다. 위에서 정조가 강조한 초점은 세자가 장성하여 책명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효과는 세자가 장성할수록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정조는 “세자 책봉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앞서 어린 나이에 책봉된 문효세자에게는 사자(使者)를 보내 책문을 주었다. 당시 예조판서 김노진(金魯鎭)은

왕세자의 책례에서 책(冊)을 받는 의절(儀節)은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세자가 나이가 들었으면 천자가 임헌(臨軒)하여 책(冊)을 주고, 나이가 어리면 사자를 보내 거처하는 궁(宮)에서 책봉한다”는 문구가 있고, 아조(我朝)의 전례에서도 또한 대신이 아된 것에 따라 사자를 보내 책을 주는 의식이 있습니다.¹¹⁾

라고 하여 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영의정 정존겸(鄭存謙)¹²⁾ 명(明)의 가정제(嘉靖帝)가 사신으로 하여금 어린 태자에게 책보(冊寶)를 전해 주도록 한 예가 있으며, 우리 조정도 그에 따라 시행했다고 설명하자, 정조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명사(明史)』 예지(禮志)에는 황태자가 2세에 보모에 안겨서 책보를 받는 구체적인 의절이 수록되어 있다.¹³⁾ 이러한 예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는 전례는 문효세자의 책봉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정조가 새로 태어난 원자의 세자 책봉을 늦춘 것은 문효세자 책봉 당시의 논의를 숙지하고, 사자를 통해 전달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장성한 세자에게 책명을 전달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원자의 세자 책봉을 늦추고 있었지만, 이미 그를 국본으로 규정하는 한편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쌓아가고 있었다. 사육신과 단종 사적에 대한

11) 『正祖實錄』 권18권, 정조 8년 7월 乙卯, “王世子冊禮 受冊儀節大明會典 有世子年長 則天子臨軒授冊 年幼則遣使冊封於所居之宮之文 而我朝已例 亦因大臣陳達 有遣使授冊之儀”

12) 당시의 기사에는 영의정으로 나오지만 실록의 전후 기사에서 鄭存謙으로 확인된다.

13) 『明史』 권54, 志30 禮8 嘉禮2 冊皇太子及皇太子妃儀, “嘉靖十八年二月 冊東宮 時太子方二歲 保姆奉之 迎冊寶於文華殿門 詣皇帝前謝恩 皇后貴妃 代太子八拜 詣皇后前 貴妃代八拜 詣貴妃前 保姆代四拜”

표장을 통해 어린 원자에 대한 신료들의 충의를 요구하였으며(윤정 2005), 후계자로서 수련을 위한 교육을 때맞추어 시행하고 있었다. 정조는 동왕 20년부터 원자의 사부(師傅)를 임명하고,¹⁴⁾ 이듬해에는 강학청(講學廳)을 설치하여 원자 교육을 수행한 것이다.¹⁵⁾

정조가 원자의 세자 책봉을 결정한 것은 동왕 24년 정월 초하루의 일이다. 이 날 정조는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을 전알(展謁)한 뒤 당시 자리가 비어 있던 영의정에 이병모(李秉模)를 특별히 제수한 다음, 대신을 인견하고 세자 책봉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조는 책봉 결정의 동기와 관련하여

이 일을 오늘 새벽 이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결정을 짓지 못하였는데, 종묘와 경모궁을 배알할 때 조종(祖宗)의 영혼[陟降]이 매우 가까이 오셔서 둘러보고 문을 나설 때 내 마음이 저절로 서로 감응하니 마치 직접 뵈고 가르침을 받는 듯할 뿐만이 아니었다.¹⁶⁾

라고 하였다. 곧 결정의 근거와 명분을 조종의 계시에서 찾은 것인데, 이는 조종의 뜻을 헤아려 실행하는 주체로서 정조 자신의 정치적 주도권을 표상하는 방안이었다. 그는 동왕 19년 환조(桓祖)를 영흥본궁(永興本宮)에 추제(追躋)할 때에도 꿈에서 선조가 교시를 내린 것을 결정적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¹⁷⁾

이어 책례와 더불어 관례와 가례를 함께 시행할 뜻을 밝히고, 신료들에게 주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신료들이 모두 찬동의 뜻을 밝히자 정조는

모두의 의논에 다른 말이 없으니 이를 일컬어 ‘대동’이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홍범」에서 이른바 “몸이 강강(康疆)해지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身其康

14) 『正祖實錄』 권 45, 정조 20년 12월 壬申

15) 『日省錄』 정조 21년 4월 21일(戊子)

16) 『正祖實錄』 권53, 정조 24년 정월 甲寅, “今曉以前 尙未決定于心矣 祇拜廟宮 陟降孔邇, 周旋出戶之際 予心自然相感 不啻若親承躬聆”

17) 『正祖實錄』 권42, 정조 19년 윤2월 壬寅

疆子孫其逢吉”라는 것이다. 곧 마땅히 전교를 내리고 맞추어 행할 모든 의절(儀節)을 품정(稟定)할 것이다.¹⁸⁾

라고 하였다. 세자 책봉에 이견이 없는 것을 들어 『서경』 「홍범」편에서 말하는 ‘대동’의 표현으로 규정하였다. 「홍범」의 대동은 복서(卜筮)와 관련하여 모든 결과가 좋게 나와 길(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정조는 세자의 책례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근거로 자손의 복을 이끌 수 있다고 전망함으로써 세자 책례의 의미를 극대화하였던 것이다.¹⁹⁾

정조가 세자 책례의 의미로서 표방한 ‘대동’의 이념은 앞서 환조 추제에서 이미 피력된 것이었다. 당시 정조는 추제에 대한 논의에서 신료들이 전반적으로 찬동 의견을 보이자

제신(諸臣)의 의논이 순(純)하여 다른 말이 없으니 이것이 ‘대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서경에 “네 마음에 따르고 구서(龜筮)도 따르고 경사(卿士)도 다르고 서민(庶民)도 따르니 몸이 강강(康疆)해지고 자손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²⁰⁾

라고 한 바 있다. 곧 정조가 제기한 환조의 영흥본궁 추제에 대해 신료들이 동의한 것이 바로 대동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범」에서 말하는 대동의 이념은 자신과 복서(卜筮), 그리고 경사(卿士)와 서민(庶民)의 뜻이 모두 일치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정조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주도에 신민이 적극 부응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던

18) 『日省錄』 정조 24년 정월 1일(甲寅), “僉議無異辭 是之謂大同 此正洪範所謂身其康疆子孫其逢吉者也 卽當下傳教 應行諸節 仍爲稟定”

19) 지금까지 정조의 ‘大同’논의는 탕평과의 관계 혹은 부세제도와와의 관련 속에서 연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金成潤(1992); 안병욱(2003) 참조.

20) 『正祖實錄』 권42, 정조 19년 윤2월 壬寅, “諸臣之議 純然無異辭 是之謂大同 書曰 予則從 龜從 筮從 卿士從 庶民從 身其康疆 子孫其逢 吉者 此也”
여기서 ‘予’는 『書經』에는 ‘汝’로 되어 있다.

것이다.

정조 19년에 실행된 환조의 추제는 환조와 사도세자의 구갑(舊甲)이 일치하는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도세자와 환조를 동일시함으로써 사도세자로부터 내려오는 왕통을 분명히 하고, 자신을 태조와 동일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중흥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신료들의 찬동을 유도하고 이를 대동의 이념으로 포장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강화하였다(윤정, 2007. 3).

정조는 이러한 ‘대동’의 이념을 다시 세자 책봉에도 투영시키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내려오는 왕통에 이어 자신으로부터 내려가는 왕통에 대해서도 대동의 이념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였던 것이다.²¹⁾ 아울러 정조는 책례를 관례·가례와 함께 거행함으로써 대동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정조가 세자 책봉을 늦춘 중요한 배경이었다.

2.2. 현종(顯宗) 전례(前例)의 채용과 의미

정조는 세자의 책례와 관례, 가례를 함께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런 만큼 그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적 논리가 필요하였다. 정조가 조상의 계시를 언급하고 대동의 이념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조는 나아가 선왕의 전례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지음으로써 그 명분을 더욱 보강하고자 하였는데,²²⁾ 이 때 주목된 것이 현종의 사례였다.

순조(純祖)의 행장에는 세자 책봉과 관련하여 그 전례를 말한 정조의 언급이

21) 이 점에서 세자 책례는 선행한 환조 추제와도 유기적인 관계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2) 선왕의 전례는 계술의 이념을 통해 국왕이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의도에 맞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열어줄 수 있었다. 영조는 이러한 계술 이념을 전면화한 대표적인 국왕이며, 정조 또한 그 연장에 있었다. 영조의 계술 이념에 대해서는 윤정(2004. 9) 참조.

인용되어 있다.

정조께서 말씀하기를, “원자가 지금 11세인데 책봉의 예(禮)를 지금까지 늦춰 잡은 것은 기다림이 있어서였다. [...] 우리 현묘(顯廟)의 고사를 보더라도 관례·책례·가례의 삼례(三禮)를 한 해에 모두 거행했었다. 천년 만년에 이르기까지 자손에게 교훈을 주고 편안케 하셨으니[貽謨燕翼] 어찌 오늘 우리가 우리러 따라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셨다.²³⁾

위에서 정조는 세자의 책례가 현종의 고사에 따른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현종은 효종 2년에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같은 해 관례와 가례까지 함께 치렀다. 관례는 8월 9일 시행되었으며,²⁴⁾ 세자 책례는 8월 28일 시행되었다.²⁵⁾ 가례는 선조의 12번째 아들인 인흥군(仁興君)의 상례 때문에 미루어졌다가, 12월 25일에 거행되었다.²⁶⁾ 이러한 현종의 사례는 정조 당시까지 예조에 『신묘년등록(辛卯年謄錄)』으로 남아 있어, 책례 축하 의식이나²⁷⁾ 세자빈 선택의 날짜를 선정할 때 구체적인 준거로 인용되었다.²⁸⁾

이러한 현종의 사례에 대해 정조는 “이모연익(貽謨燕翼)”, 곧 후손에게 교훈을 내려 주고 편안케 하였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모연익’은 『시경』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의 「문왕유성(文王有聲)」장에 있는 구절로 무왕(武王)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이것은 ‘대동’을 통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홍범」의 이념과 상통한다. 정조는 환조의 추제를 대동의 이념으로 포장한 것처럼 세자의 책례에서도 현종의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대동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23) 『純祖實錄』附錄 行狀, “正廟教曰 元子今爲十一歲 封冊之禮 尙今遲遲者 蓋有待耳 [...] 亦粵我顯廟故事 竝舉冠冊嘉三禮於一歲之中 貽謨燕翼於千於萬 豈非今日之所可仰遵乎”

24) 『孝宗實錄』 권7, 효종 2년 8월 甲寅

25) 『孝宗實錄』 권7, 효종 2년 8월 癸酉

26) 『孝宗實錄』 권7, 효종 2년 12월 戊辰

27) 『正祖實錄』 권53, 정조 24년 1월 丁丑

28) 『正祖實錄』 권54, 정조 24년 윤4월 辛酉

정조가 세자 책례에서 현종의 전례를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은 당시 제작된 계도병(契圖屏)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책례에는 책례도감(冊禮都監)의 행사 과정을 담은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궤([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가 작성되었으며,²⁹⁾ 행사 후 도감이 만든 계도병이 전하고 있다. 이 계도병은 8폭으로 되어 있는데, 6폭의 그림 앞뒤로 서문과 좌목(座目)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그림의 앞 4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왕세자책례계도병(王世子冊禮契圖屏)³⁰⁾

우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쓴 서문에서는 행사의 의의와 계도병을 만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³¹⁾

29)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奎 13119, 奎 13120, 奎 13121.

30) 박정혜(2000), 94쪽. 이 책에서는 그림의 소장처에 대해 ‘민병두 소장’으로 밝히고 있으나 필자가 확인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던 것으로, 두 그림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한다. 하지만 6폭의 그림 가운데 4폭의 그림만을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는 異本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과 계도병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할 것이다.

31) 국립박물관 소장 전시 유물을 필자가 2006년 12월 17일 필사하였다.

국가에 큰 경례(慶禮)가 있으면 근래의 신하들은 병풍으로 그 일을 그리고 왼쪽에 명단을 적어 후인(後人)들이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성상께서 등극하신 지 24년 중춘(仲春) 초길(初吉)이 다음 달인 을유(乙酉)에 우리 왕세자를 집복헌(集福軒)에서 책봉하시면서 먼저 관례(三加禮)를 행하고 다음에 책례를 행하였으며, 유사(有司)에게 가례하는 길일을 올리도록 하였다. 세개의 의례를 일시에 모두 거행하는 것은 우리 현종의 신묘년 의례를 따른 것이다.³²⁾

여기서 당시의 행사가 현종의 사례를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도병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병은 통상 왕실과 직접 연계된 행사에 만들어졌으며, 계첩에 비해 격이 높은 것이었다.³³⁾ 이러한 계도병의 서문에서 현종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았음을 명시한 것은 당시 책례에서 현종의 전례가 중시된 사정을 반영한다.

그러나 정조가 원용하고 있던 현종의 사례는 실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는 세손에 책봉되었다가 세자가 되고 이어 즉위하는 과정을 밟았다. 현종은 인조 때 세손으로 책봉된 뒤 효종 즉위 후 곧바로 세자의 위호(位號)를 받았으나 인조의 국상 중이었기 때문에 책례는 3년상을 치른 뒤로 연기되었다.³⁴⁾ 그 결과 효종 2년 8월 9일에 관례를 먼저 행한 뒤 26일에 책례를 행하였다.

곧 현종은 세손에서 세자로 진봉(進封)하는 상황과 인조의 국상이라는 사정이 개재된 경우인 것이다. 따라서 곧바로 세자를 책봉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조가 현종의 사례를 원용한 것은 책례와 관례, 가례를 한꺼번에 행하는 전거를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일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 초점은 바로 입학례를 배제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다

32) 『王世子冊禮圖屏』序, “國家有大慶禮 近來之臣 屏以繪其事 題名于左 以爲後人觀攷事也 我聖上御極之二十有四年仲春初吉之越翼日乙酉 冊我王世子於集福軒 先行三加禮 次行冊儲禮 申命有司涓進嘉禮吉日 三禮之並舉一時 式遵我顯廟辛卯徽規也”

33) 영조가 준천 사업 후 계병 대신 계첩을 만들도록 한 것은 사업의 격에 대한 구분 의식을 반영한다(『承政院日記』 1180책, 영조 36년 4월 21일(乙未)).

34) 『孝宗實錄』 권2, 효종 즉위년 10월 辛亥

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입학례(入學禮)의 배제와 정조의 ‘군사’ 이념

3.1. 책례 시행과 입학례의 배제

정조가 책봉 의사를 밝히고 신료들이 찬동함에 따라 곧바로 책례 등을 서행하기 위한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당일 이병모를 세자사(世子師)로, 심환지(沈煥之)를 세자부(世子傅)로 삼았으며, 아울러 이병모를 관례책저도감(冠禮冊儲都監) 도제조(都提調)로, 홍양호(洪良浩)·홍억(洪億)·이만수(李晩秀)를 제조(提調)로 삼았다. 그리고 빈객(賓客) 이하의 시강원 관원들도 임명하였다. 관례와 책봉을 함께 행하기 때문에 도감도 양자를 겸하게 되었다.³⁵⁾

정조 24년 2월 마침내 세자의 관례와 책례가 집복헌에서 거행되었다. 두 의례는 같은 날 이루어졌지만, 순서 상으로는 관례가 먼저였다. 그런데 의례 실행에서 중심은 책례에 있었으며, 관례는 책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정조는 책봉을 결정할 당시

관례하여 자(字)를 부르는 것은 성인(成人)을 만들기 위함인데, 열조(列廟)의 관례는 모두 책례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관례하는 날에 으레 훈서(訓書)가 있었다. 이번에는 책례와 병행하기로 했으므로 책서(冊書)로써 훈서를 겸하는 것도 또한 예의(禮意)에 합당할 것이다.³⁶⁾

라고 하였다. 이는 곧 책례와 관례를 동시에 행하겠다는 뜻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책서로 훈서를 겸한다는 것이다. 관례에서 내려주는 훈서는 성인으로서

35) 『正祖實錄』 권53, 정조 24년 정월 甲寅

36) 『正祖實錄』 권53, 정조 24년 정월 甲寅, “且冠而字之 爲其成人 而列朝冠禮 皆在冊禮之後 故冠禮之日 例有訓書 而今既與冊禮並行 則以冊書兼訓書 亦合禮意”

역할을 당부하는 것이라면, 책례에서 내려주는 책서는 세자로서 역할을 당부하는 것이었다. 훈서를 책서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행사의 초점이 책봉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었다.

정조는 이러한 의례를 통해 성인이 된 세자에게 직접 왕통을 전수하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앞서 정조는 책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연기함으로써 미리 원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그에 대한 신료들의 충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관례와 연결된 책례를 시행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왕통을 전수하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하여 세자의 위상을 확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책례 과정에서 입학례를 배제한 것은 이러한 정조의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입학례는 세자, 혹은 왕자가 사부로부터 정식 교육을 받게 되는 의례로서 세자에게는 책례 등과 함께 핵심적인 의례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원자의 경우 통상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고, 뒤이어 8세가 되면 입학례를 치른 후, 관례와 가례의 과정을 밟았다.

예외적 상황에서 계승자로 지명된 효종·영조와 세손에서 세자로 오르면서 인조의 상을 치렀던 현종의 경우를 제외할 때, 조선후기의 세자·세손은 대개 이러한 단계를 밟고 있었다. 행장(行狀)과 행록(行錄)·지문(誌文)에 의거하여 책례와 입학례, 관례, 가례의 시기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⁷⁾

표) 조선후기 세자·세손의 책례·입학례·관례·가례 실행 시기

	책봉	입학례	관례	가례
숙종	7세	9세	10세	11세
경종	3세	8세	8세	9세
효장세자	7세	9세	9세	9세
사도세자	2세	8세	9세	10세
정조	8세	10세	10세	11세

37) 『肅宗實錄』附錄, 肅宗大王行狀; 『景宗實錄』附錄, 景宗大王行狀; 『英祖實錄』권20, 영조 4년 11월 壬申(孝章世子行錄); 『正祖實錄』권28, 정조 13년 10월 己未(莊憲世子誌文); 『正祖實錄』附錄, 惠慶宮書下行錄

이상의 전례를 보면 대개 책례는 별도의 과정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주로 입학과 관례, 가례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입학은 통상 8세에 행하였는데, 책봉이 7세에 이루어지면 입학이 9세로 늦추어지고 8세에 책봉하면 입학이 10세로 늦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정조의 경우에도 세손빈을 입학례와 관례가 시행되는 해 12월에 간택을 마쳤는데, 이는 입학례와 관례·가례를 함께 치르는 의미로 해석된다.³⁸⁾

이에 비해 정조가 세자를 위해 배설한 의례는 책례와 관례, 가례를 묶는 것으로서 입학례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통상적인 의례와 다른 방향에서 진행된 의례인 만큼 여기에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자의 책례를 논의할 당시 정조는 책봉과 관례, 가례를 함께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편의 “한 가지를 행하여 삼선(三善)을 다 얻는다(行一物而三善皆得)”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구절에서 ‘한 가지[一物]’이란 세자가 국학(國學)에서 나이순에 따라 배우는 것 [齒學]을 가리키며, ‘삼선’이란 세자의 치학을 통해 사람들이 부자(父子)의 도리와 군신(君臣)의 의리, 장유(長幼)의 예절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세자라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학문을 함으로써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의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차후 통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삼선’이라는 의미는 본래 치학에 따른 것으로서 원론상 세자의 입학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조는 세자의 입학례를 생략하고 대신 책례를 중심으로 의례를 실행하였다. 곧 입학례 대신에 책례를 통해 삼선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정조도 이러한 차이를 의식하여 단장취의(斷章取義)한다고 밝히고 있다.

책례의 모범으로 제시된 현종의 경우, 입학례는 당초 관례를 행한 뒤 그 절차가 논의되었으나 예조에서는 세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듬해로 물려서 정하자

38) 入學은 3월 10일에 하였고(『英祖實錄』 권 97, 영조 37년 3월 己酉), 관례는 18일에 하였다(『英祖實錄』 권97, 영조 37년 3월 丁巳). 그리고 세손빈의 간택은 전년 12월에 있었다(『英祖實錄』 권98, 영조 37년 12월 丙戌).

고 요청하였다.³⁹⁾ 이에 따라 현종의 입학례는 효종 3년 4월에 가서 비로소 시행되었다.⁴⁰⁾ 전술했듯이 현종의 책례는 효종 즉위년부터 확정된 것이지만, 인조에 대한 3년상으로 인해 효종 2년으로 연기된 것이고, 반대로 입학례는 효종 2년에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1년 뒤로 밀린 것이다. 따라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책례가 선행한 것이고 입학례와 관례·가례가 연계된 것으로, 통상적인 의례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조는 원론적인 내용 대신에 현실적으로 행해졌던 변용의 사례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의례의 실행이 입학례를 배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며, 현종의 사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조가 현종의 사례 중 책례가 관례 및 가례와 같은 연도에 이루어진 것만을 특기할 뿐, 당초 동시기로 예정되었다가 1년 뒤에 거행된 입학례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정조가 삼례(三禮)를 통합 실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입학례를 배제하려는 것이었음은 정조 21년의 논의에서 읽을 수 있다. 이 해 11월 제신(諸臣)들이 원자의 세자 책봉을 촉구하자 정조는

만일 응당 행해야 할 예(禮)를 전례를 상고하여 행한다면, 입학·책봉·가례를 장차 해마다 행해야 하니, 의문(儀文)이 너무 장대해질 듯하다. 해마다 경사를 거행하기보다는 1년에 합해서 거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을묘년(정조 19) 경사 때에도 육경(六慶)을 합하여 거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반드시 늦추며 기다리고자 하는 이유이다.⁴¹⁾

라고 하였다. 위에서 정조는 종전부터 신료들이 요구해 오던 책례를 대상으로

39) 『孝宗實錄』 권7, 효종 2년 8월 戊辰

40) 『孝宗實錄』 권8, 효종 3년 4월 癸丑

41) 『正祖實錄』 권47, 정조 21년 11월 己巳, “若以應行之禮 按例行之 則入學封冊嘉禮 將逐年爲之 儀文太涉張大 年年稱慶 不如合舉一年 故乙卯之慶 亦合六慶 此予所以必欲遲待也”

말하고 있으나 당시 원자의 나이가 8세가 되어 입학례가 시행될 시점에 이르렀음을 감안하면, 이것이 입학례를 연기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차적인 시행의 부담을 말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다.

여기에는 앞서 실행한 6경의 사례가 원용되고 있는데, 6경이란 당초 5경에 환조의 영흥본궁 추제를 추가한 것이었다.⁴²⁾ 5경은 정조의 즉위 20년, 정순대비의 망육(望六) 존호(尊號) 가상(加上), 사도세자의 존호 추상(追上), 혜경궁(惠慶宮)의 주갑(周甲), 혜경궁의 존호 가상이다.⁴³⁾ 결국 정조 19년에 6개의 경사를 통합하여 실행한 것을 전례로 삼아 책례를 연기하였고, 이에 따라 입학례도 자연스럽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다시 “입학시키는 것은 관례 전후로 어느 때나 안 될 것이 없지만, 관례를 행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⁴⁴⁾고 밝혀 입학례를 관례 뒤로 미루어 두었다. 입학이 관례보다 늦은 경우는 장성한 뒤에 후계자가 된 효종과 영조를 제외하면 조선후기에는 현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 표현 또한 현종의 사례를 근거로 내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조는 책례를 관례 및 가례와 묶어 삼선의 효과를 표방하였고, 이들 의례가 행해진 가장 늦은 나이인 11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어 가례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행장에 따르면 재간택(再揀擇)이 끝난 후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세자빈으로 내정하면서 사체가 별궁(別宮)과 다름이 없으므로 지친(至親) 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 보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⁵⁾ 이것은 의례 실행을 남겨두었을 뿐 사실상 가례에 해당하는 의미를 확보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연내에 가례

42) 『正祖實錄』 권42, 정조 19년 윤2월 壬寅, “命桓廟追躋慶科 合設於五慶 庭試以六慶稱號”

43) 『日省錄』 정조 18년 12월 13일 甲寅, “今番慶名 當以殿下卽卅二十年 慈殿寶齡望六加上尊號 景慕宮追上尊號 慈宮寶齡周甲 慈宮加上尊號 合五慶稱號乎 從之 教以慶名以合五慶稱號”

44) 『正祖實錄』 권52, 정조 23년 11월 庚辰

45) 『正祖實錄』 권54, 정조 24년 윤4월 辛酉

까지 실행한다는 의미를 확보하였다. 다만 정조의 급서로 국상을 치르게 됨에 따라 가례는 순조 2년에 이르러 비로소 실행되었다.

반면 입학례는 논의되지도 않았고 끝내 실행되지도 않았다. 이는 현종의 사례로 보아 이듬해에 예정되었던 것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례 후 입학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후로도 실행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후술하듯이 알성(謁聖)을 제외하면 입학에 수반되는 사부 임명과 『소학』 강독 등이 모두 강학청(講學廳)을 통해 처리되었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3.2. 입학례 배제에 나타난 정조의 '군사' 이념

정조 24년의 입학례 대신 책례를 중심으로 관례와 가례를 묶어 삼선(三善)의 명분을 확보한 것이었다. 이것은 선왕인 숙종이나 영조와는 다른 면모였다. 숙종과 영조는 세자의 위상 확보와 연계하여 입학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숙종은 『소학』을 어제서(御製序)와 함께 인간하고 이를 입학례에 사용하도록 하였다.⁴⁶⁾ 숙종 21년 3월 세자의 입학례가 거행되었는데,⁴⁷⁾ 고례(古禮)에 따라 세자는 먼저 성균관에 나아가 문묘(文廟)를 배알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이어 명륜당에서 박태상(朴泰尙)에게 『소학』을 받고, 여러 유생들과 나이 순서대로 앉았다.

이튿날 숙종은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백관의 하례를 받고 교문(敎文)을 반포하였는데, 여기서 숙종은

두 日月이 이어서 밝아, 일찍이 억조 백성의 희망이 쏠렸고, 8세에 입학하니 삼대의 학규(學規)를 따랐다. 이에 사(詞)를 내려 함께 경축함을 흐뭇하게 여기노라. [...] 세자가 몸을 굽혀 여러 유생들과 나이대로 앉으니[屈貳君而齒生] 일은 도덕을 중히 여기는 데서 빛나고, 한 가지를 행하여 삼선(三善)을 얻으니

46) 숙종의 『소학』 인간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윤정(2004, 12) 참조.

47) 『肅宗實錄』 권28, 숙종 21년 3월 癸酉

[行一物而得三善], 의리가 인륜을 밝히는 데서 나타난다. 예악(禮樂)·시서(詩書)가 여기에 갖추어지니 환하게 말할 만한 것이 있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여기에 근본하니 여기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 이제 장차 온갖 복록(福祿)이 여기에 모일 것이니, 나 혼자만 사사로이 기쁜 것이 아니다.⁴⁸⁾

라고 하여 세자의 입학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천명하였다. 여기서 숙종은 세자의 치학을 통해 삼선의 효과를 얻는다는 삼대의 학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근본이 여기에 있음을 말한 것은 이 행사가 세자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는 매개임을 말한 것이었다.

이처럼 입학례는 왕위 계승자의 위상을 공인하는 행사로 자리하고 있었고, 『소학』은 그러한 이념을 표현하는 매개로서 중시되었다. 영조가 늦은 나이에 도 불구하고 입학례를 거치고 『소학』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28세에 세제(世弟)에 책봉되었던 영조는 이듬해 입학하였는데,⁴⁹⁾ 이 때 태학박사 조태억(趙泰億)으로부터 『소학』을 배웠다.⁵⁰⁾ 경종은 영조가 입학한 이튿날 반포한 교서에서 영조가 『소학』을 배우는 의미를 각별하게 설명하고 있었다.⁵¹⁾

『소학』 강독은 왕위 계승자로서 훈련과정에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국왕의 성학(聖學)을 바라는 사대부·신료들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이었다.⁵²⁾ 따라서 『소학』은 나이나 실제의 학문 수준과 상관없이 입학과 연계하여 학문적 단계를 밟는 출발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자, 혹은 세제에게 왕위 계승을 상징하였

48) 『肅宗實錄』 권28, 숙종 21년 3월 甲戌, “兩離繼明 早繫兆姓之望 八歲入學 式遵三代之規 肆用宣詞 嘉與同慶 [...] 屈貳君而齒生 事光重道 行一物而得三善 義著明倫 禮樂詩書之備於斯 煥焉可述 修齊治平之本乎此 尙矣何加 方將百祿是道 非獨一人私喜”

49) 『景宗實錄』 권9, 경종 2년 9월 庚子

50) 『景宗實錄』 권9, 경종 2년 9월 庚子

51) 『景宗實錄』 권9, 경종 2년 9월 辛丑, “灑掃應對之節 既已踰小學之年 修齊治平之要 今乃講大人之道”

52) 효종의 경우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현세자의 서거 후에 세자로 책봉된 효종의 경우, 책봉 당시 나이가 26세였다. 이 때 효종은 책봉과 더불어 入學하였다(『仁祖實錄』 권46, 인조 23년 10월 庚寅).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논할 것이다.